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사보고서

2023년 11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
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11월 28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경제국장 한만석)

가. 제안이유

 상위법령인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을 반영하여 금천일자리 주식회사가 필요시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외부감사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(안 제13조)
-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사항 규정(안 제16조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을 반영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필요시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ㅇ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3조에서는 외부감사에 대한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 하고
 - 안 제16조에서는 성과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 특별시 금천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음.
- 외부감사에 대한 강행규정 사항은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소관위원회 (2022.12.1.)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,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<u>원안가결</u>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